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0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의 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립하고, 전기차에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정하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서 차량 총중량의 상한 조건을 삭제(안 제2조제1항)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4항)

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표시의무를 제작자에게 부여(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별표4)

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 발급업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자동차 분류별로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안 제9조제4항, 제5항, 별지5, 5의2, 5의3, 5의4)

마. 전기자동차의 효율등급 표시 및 타 효율관리기자재 라벨과 통일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디자인 및 작도법 개정(안 별표 5 및 별표 5의 별첨)

바. 전기자동차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광고할 경우 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7)

3. 의견제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전화 : 044-203-5149, 팩스 : 044-203-4759

○ 전자우편 : jjpark5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전화 044-203-5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0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자동차 제작사”를 “제작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를 “제작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을 신고하지 아니하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본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5호, 제5-2호, 제5-3호 및 제5-4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등급	1	2	3	4	5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km/L)	16.0 이상	15.9 ~ 13.8	13.7 ~ 11.6	11.5 ~ 9.4	9.3 이하
전기자동차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5.9 이상	5.8 ~ 5.1	5.0 ~ 4.3	4.2 ~ 3.5	3.4 이하

별표 4 중 “경형 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를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는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및”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주) 제1호 단서 중 “경형 및 전기자동차”를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로 하고, 같은 주) 제2호 중 “(cc)은”을 “(cc) 대신에”로, “표시(저속전기자동차는 도심주행연비만 표시)한다”를 “표시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표시방법을 2023년 11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어야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 ---------- ----------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생 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④ ~ ⑰ (생 략)	⑤ ~ ⑱ (현행 제4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
제9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	제9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① ---------- ---------- ---------- ---------- ---------- ---------- ---------- ---------- ---------- ---------- ---------- ---------- ----------. <단서 삭

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등급을 신고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	제> ---------- ---------- ---------- ---------- ---------- ---------- ---------- ------. <후단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을 신고하지 아니하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등급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자가 등급을 신고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본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신 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5호, 제5-2호, 제5-3호 및 제5-4호의 서식에 따른다.
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	⑥ ---------- 제3항----------

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제작사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내역 등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 제작자---------.
⑦ 자동차제작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⑧ 제작자---------.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별표 4]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

(단위 : km/L)

구분 \ 등급	1	2	3	4	5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16.0이상	15.9~13.8	13.7~11.6	11.5~9.4	9.3이하

단, 경형 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 함

(단위 : km/L)

구분 \ 등급	1	2	3	4	5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km/L)	16.0 이상	15.9 ~ 13.8	13.7 ~ 11.6	11.5 ~ 9.4	9.3 이하
전기자동차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5.9 이상	5.8 ~ 5.1	5.0 ~ 4.3	4.2 ~ 3.5	3.4 이하

단,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는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 함

[별표 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1. 경형 자동차



2. 승용, 승합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





[별표 5]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1. 내연기관 자동차

(1) 경형



(2) 경형 외





4. 전기자동차

○ 저속 전기자동차



○ 고속(일반) 전기자동차



3. 하이브리드자동차



5.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2. 전기자동차

(1) 초소형



(2) 초소형 외





3. 하이브리드자동차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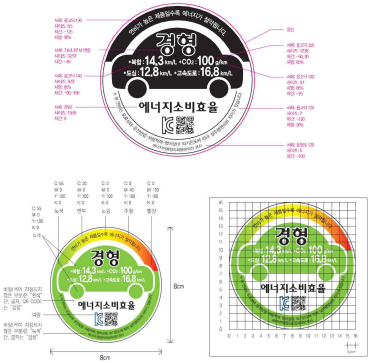


6. 수소전지자동차



[별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작도법)

1. 경형 자동차



2. 승용, 승합 및 화물자동차(경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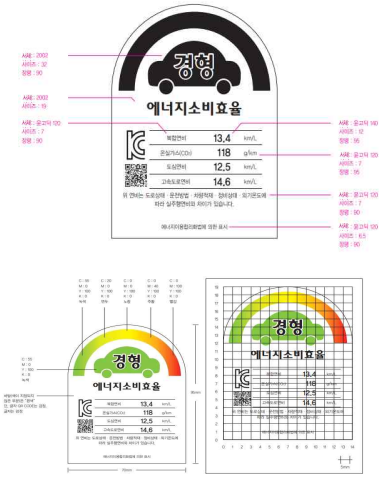
5. 수소전기자동차



[별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작도법)

1. 내연기관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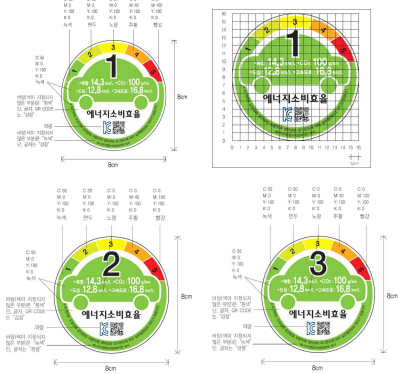
(1) 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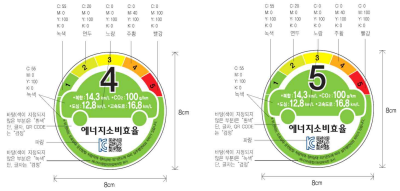


(2) 경형 외

-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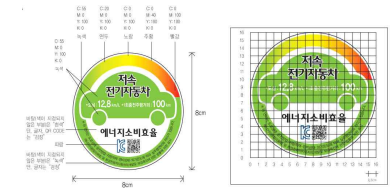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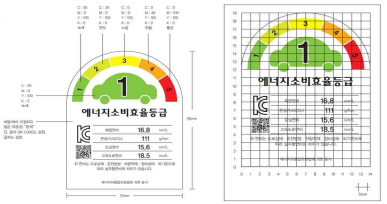


4. 전기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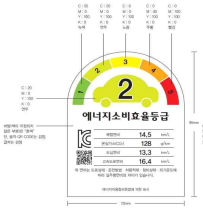
○ 저속 전기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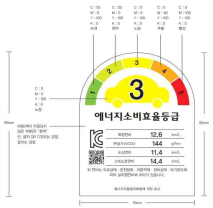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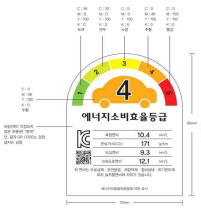
- 2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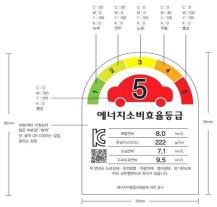
- 3등급



- 4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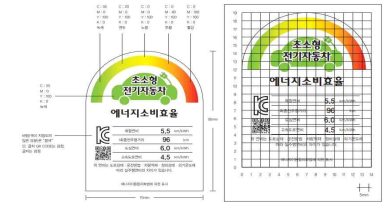
- 5등급



2. 전기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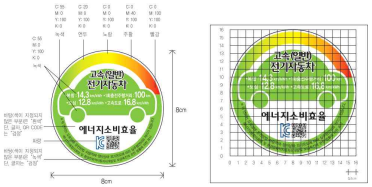
(1) 초소형





○ 고속(일반) 전기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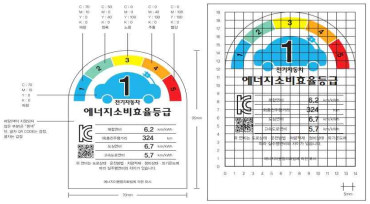




(2) 초소형 외

- 1등급





- 2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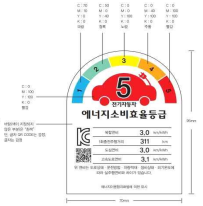
- 3등급



- 4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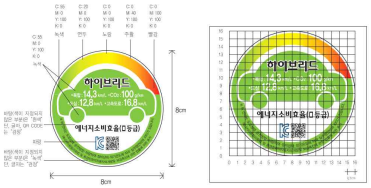


- 5등급



3. 하이브리드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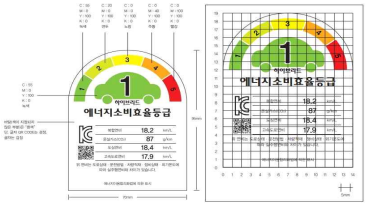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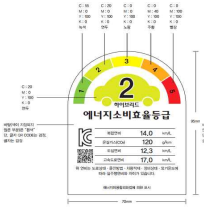
3. 하이브리드자동차

-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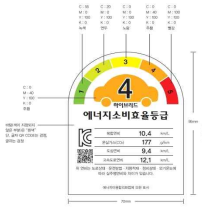
- 2등급



- 3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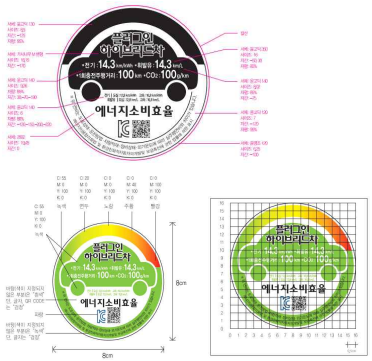
- 4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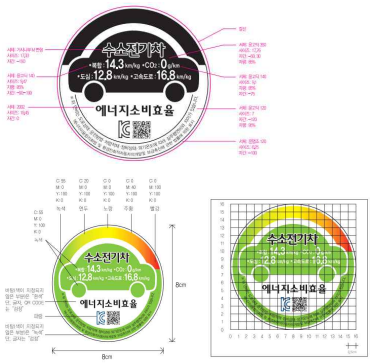
- 5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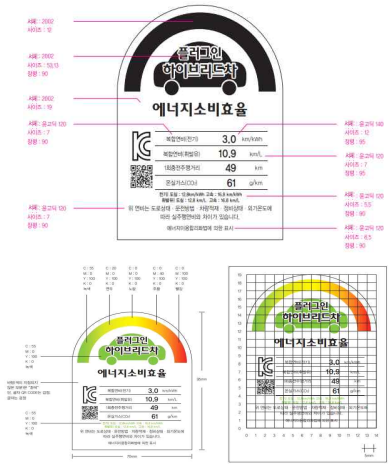
5.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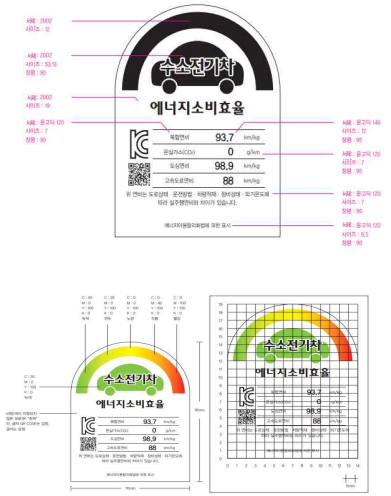
6. 수소전지자동차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5. 수소전기자동차



[별표 7]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정 부 신 고 연 비 및 등 급
차 종 명 :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수동・자동 단)
복합연비 : km/L
(도심연비 : km/L, 고속도로연비: km/L)
등 급 : 등급 복합CO_2 배출량 : 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 1. 여러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세부 동일차종별로 연비, 이산화탄소배출량, 등급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2.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은 축전지 정격전압(V) 및 용량(Ah)을, 변속기 형식 및 단수 대신에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Wh로 표시(저속전기자동차는 도심주행연비만 표시)한다.

3.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도심, 고속도로, 복합연비의 표기는 CD연비(km/kWh), CS연비(km/L)로 나누어 표기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추가 표시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g으로 표시한다.

5. "도심주행연비"는 "도심연비"로 "고속도로주행연비"는 "고속도로연비"로 표시한다.

[별표 7]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정 부 신 고 연 비 및 등 급

차 종 명 :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수동・자동 단)
복합연비 : km/L
(도심연비 : km/L, 고속도로연비: km/L)
등 급 : 등급 복합CO_2 배출량 : 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 1. 여러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세부 동일차종별로 연비, 이산화탄소배출량, 등급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2.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 대신에 축전지 정격전압(V) 및 용량(Ah)을, 변속기 형식 및 단수 대신에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Wh로 표시한다.

3.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도심, 고속도로, 복합연비의 표기는 CD연비(km/kWh), CS연비(km/L)로 나누어 표기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추가 표시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g으로 표시한다.

5. "도심주행연비"는 "도심연비"로 "고속도로주행연비"는 "고속도로연비"로 표시한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시 험 기 관			성적서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차 명		출 시 일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자동차형식	전기자동차
연 료 명	전기	승차정원(인)		공차중량(kg)	
구동 축전지 종류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전동기 종류		전동기 최고출력(ps/rpm)		전동기 최고토크(kg.m/rpm)	
국산/수입		구동방식		타이어사이즈(전)	
축거/윤거(mm)		최고속도(km/h)		타이어사이즈(후)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소요시간		축전지 수명(년)	
실도로부하력	F0 :	F1 :	F2 :		

☐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측정[1]	FTP-75 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HWFET 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하향[2]		FTP-75 모드 연비(km/kWh)	HWFET 모드연비(km/kWh)
복합모드[3]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5-cycle 보정[4]	도심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고속도로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복합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5. 배터리 제작사 및 전동기 제작사 발급 보증 서류 각 1부.
6.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년 월 일

업 체 명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고속)형, 저속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
3)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4)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시 험 기 관 성적서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제 조 사 | 차 명 | 출 시 일
자동차종류 | 자동차유형 | 자동차형식 | 전기자동차
연 료 명 | 전기 | 승차정원(인) | 공차중량(kg)
구동 축전지 종류 | 축전지 출력전압(V) | 축전지 용량(Ah)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최고출력(ps/rpm) | 전동기 최고토크(kg.m/rpm)
국산/수입 | 구동방식 | 타이어사이즈(전)
축거/윤거(mm) | 최고속도(km/h) | 타이어사이즈(후)
1회충전전력량(kWh) | 1회충전소요시간 | 축전지 수명(년)
실도로부하력 | F0 : | F1 : | F2 :

☐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측정[1] FTP-75 모드 |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HWFET 모드 |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하향[2] | FTP-75 모드 연비(km/kWh) | HWFET 모드연비(km/kWh)
복합모드[3] |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5-cycle 보정[4] 도심주행 |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고속도로주행 |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복합 | 연비(km/kWh) | 1회충전주행거리(km)
등급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결과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연비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각 1부.
2. 자동차 외관사진 1부.
3. 시험자동차 coast-down 측정 자료 1부.
4.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보고서 1부. (자체측정시)
5. 배터리 제작사 및 전동기 제작사 발급 보증 서류 각 1부.
6. 재측정 시험 사유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1부. (재측정 신고시)

년 월 일

업 체 명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자동차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2. 자동차유형 : 일반(고속)형, 저속형 등
3. 자동차형식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등

주) 1) 측정된 연비, 1회충전주행거리는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1회충전주행거리', '5-cycle 보정 1회충전주행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
3)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고,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4) 5-cycle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하며, 1회충전주행거리는 정수(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다.

[별지 제2호의6 서식]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전기자동차 MCT)

☐ **일반사항**

업 체 명		시험차명					
시험실ID		시험번호		시험일자			
시험규격	MCT	장비작동자	(확인)	기술책임자	(확인)		

☐ **시험자동차 기본제원**

차대번호			제작년도		변속기 형식		
시험 전 주행거리		차량총중량(kg)		관성중량(kg)		공차중량(kg)	
실도로부하력	F0:		타이어제원		타이어 공기압		
	F1:		구동축 전지 종류		차량 구동방식		
	F2:		축전지용량/출력전압		차량 최대속도		
전동기 종류			전동기 최대출력		전동기 정격전압		

☐ **시험설비**

차대동력계	제어형식		관성		최고속도		최대부하		
	동력계 설정값	F0:	F1:	F2:	롤러형식		롤러직경		

☐ **시험조건**

구분	압력(kPa)	건구온도(℃)	상대습도(%)
측정값			

☐ **시험결과**

구분	UDDS 1	HWFET 1	UDDS 2	CSCM	UDDS 3	HWFET 2	UDDS 4	CSCE	총계
누적거리(km)									
구간거리(km)									
누적충전전력량(kWh)									
구간충전전력량(kWh)									
직류에너지소비율 (kWh/km)									
직류에너지연비 (km/kWh)									

[충전 항목]

교류에너지충전량 (kWh)		직류에너지충전량 (kWh)		1회충전소요 시간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항 목	항 목	K_UDDS1	Ecdc[cycle] (kWh/km)	연비 (km/kWh)	1회충전주행거리 (km)	비고
측정	CITY					
	HWY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항 목	연비 (km/kWh)			1회충전주행거리 (km)	비고
항 목	CITY	HWY	복합		
보정값					

첨부서류
1. 시험사진(장비, 자동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2. Coast Down 및 도로부하 측정 자료는 모니터 화면 스캔 또는 인쇄본을 함께 제출
3. 배터리 수명, 배터리 정고조건, 적산 직류량 등은 첨부로 제출
4. 기타 시험보고서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별지 제2호의6 서식]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 시험 보고서 (전기자동차 MCT)

☐ 일반사항

업 체 명 | 시험차명
시험실ID | 시험번호 | 시험일자
시험규격 MCT | 장비작동자 (확인) | 기술책임자 (확인)

☐ 시험자동차 기본제원

차대번호 | 제작년도 | 변속기 형식
시험 전 주행거리 | 차량총중량(kg) | 관성중량(kg) | 공차중량(kg)
실도로부하력 F0: | 타이어제원 | 타이어 공기압
F1: | 구동축 전지 종류 | 차량 구동방식
F2: | 축전지용량/출력전압 | 차량 최대속도
전동기 종류 | 전동기 최대출력 | 전동기 정격전압

☐ 시험설비

차대동력계 제어형식 | 관성 | 최고속도 | 최대부하
동력계 설정값 F0: | F1: | F2: | 롤러형식 | 롤러직경

☐ 시험조건

구분 | 압력(kPa) | 건구온도(℃) | 상대습도(%)
측정값

☐ 시험결과

구분 | UDDS 1 | HWFET 1 | UDDS 2 | CSCM | UDDS 3 | HWFET 2 | UDDS 4 | CSCE | 총계
누적거리(km)
구간거리(km)
누적충전전력량(kWh)
구간충전전력량(kWh)
직류에너지소비율 (kWh/km)
직류에너지연비 (km/kWh)

[충전 항목]

교류에너지충전량 (kWh) | 직류에너지충전량 (kWh) | 1회충전소요 시간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항 목 | 항 목 | K_UDDS1 | Ecdc[cycle] (kWh/km) | 연비 (km/kWh) | 1회충전주행거리 (km) | 비고
측정 CITY
HWY

☐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 결과

항 목 | 연비 (km/kWh) | 1회충전주행거리 (km) | 등급 | 비고
항 목 | CITY | HWY | 복합
보정값

첨부서류
1. 시험사진(장비, 자동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2. Coast Down 및 도로부하 측정 자료는 모니터 화면 스캔 또는 인쇄본을 함께 제출
3. 배터리 수명, 배터리 정고조건, 적산 직류량 등은 첨부로 제출
4. 기타 시험보고서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 신 설 >

[별지 제5호 서식]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업체명		구분	
주소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시험기관/성적서번호	/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내역	차종 및 유형		
	배기량(cc)		
	공차중량(kg)		
	변속기형식 및 단수		
	연료명		
	연료공급방식		
	복합모드연비(km/L)	복합CO2 배출량(g/km)	
	5-cycle 도심주행 연비(km/L)		
	5-cycle 고속도로 주행 연비(km/L)		
	5-cycle 복합연비(km/L)		
	등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신 설 >

[별지 제5호의2 서식]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확인서

업체명			구분		
주소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시험기관/성적서번호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내역	차종 및 유형				
	공차중량(kg)				
	구동 축전지 종류				
	최고출력(ps/rpm)				
	최고토크(kg·m/rpm)				
	1회충전전력량(kWh)				
	1회 충전소요시간				
	연료명				
	복합CO2 배출량(g/km)				
	복합모드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5-cycle 도심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5-cycle 고속도로 주행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5-cycle 복합연비	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등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신 설 >

[별지 제5호의3 서식]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업체명		구분			
주소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시험기관/성적서번호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내역	차종 및 유형				
	배기량(cc)				
	공차중량(kg)				
	변속기형식·단수				
	연료명				
	연료공급방식				
	복합모드 연비	CD모드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CS모드연비(km/L)		CO2 배출량(g/km)	
	5-cycle 도심주행	CD모드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5-cycle 고속도로 주행	CD모드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5-cycle 복합	CD모드연비(km/kWh)		1회충전주행거리(km)	
		CS모드연비(km/L)		CD+CS모드연비(km/L)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신 설 >

[별지 제5호의4 서식]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확인서

업체명		구분		
주소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시험기관/성적서번호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내역	차종 및 유형			
	공차중량(kg)			
	구동 연료전지 종류			
	전동기 최고출력(ps/rpm)			
	전동기 최고토크(kg·m/rpm)			
	연료명			
	복합모드 연비(km/kg)			
	5-cycle	도심주행 연비(km/kg)		
		고속도로 주행 연비(km/kg)		
		복합연비(km/kg)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신고확인서의 신고내역은 신고업체의 책임 하에 기재되었음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